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특약

제 1조 [목적]

제 2조 [신청대상에 관한 사항]

제 3조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제 4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제 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특약

제 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별도로 정하는 주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신청대상에 관한 사항]

① 이 특약은 해당계약(해당계약은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및 특약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출산한 경우(출산은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중인 경우

용어해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말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해당기간 내에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적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 3조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자가 제2조(신청대상에 관한 사항)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납입유예' 신청시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을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선택해야 하며, '납입유예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 이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설명

[납입유예기간 예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가 “연납”인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은 12개월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②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서(회사 양식)
2.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출산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나. 육아휴직: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신청 이후 취소한 경우 및 다른 제도성특약을 통해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주계약 보험료 납입 면제된 계약 및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을 포함합니다)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 의무납입이 종료된 계약
3.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다만,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또는 자동대출납입이 적용된 계약
5. 중도인출 또는 보험계약대출이 적용된 계약
6. 주계약의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갱신형 주계약의 갱신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1년 이상인 경우, 6개월 ‘납입유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형 주계약의 갱신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1년 이상인 경우 포함합니다)
7.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을 해당계약 보험료(이하 ‘납입유예 보험료’라 합니다) 총액이 ‘납입유예’ 신청 시점 해당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납입유예기간’ 중 갱신형보험의 갱신일이 도래하여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가 해당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유예’ 신청일 기준의 갱신형 보험의 요율에서 갱신시 연령증가분만 반영하여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 4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①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신청 이후 최초 도래하는 해당계약의 납입기일부터 ‘납입유예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하고 계약자적립액 등을 계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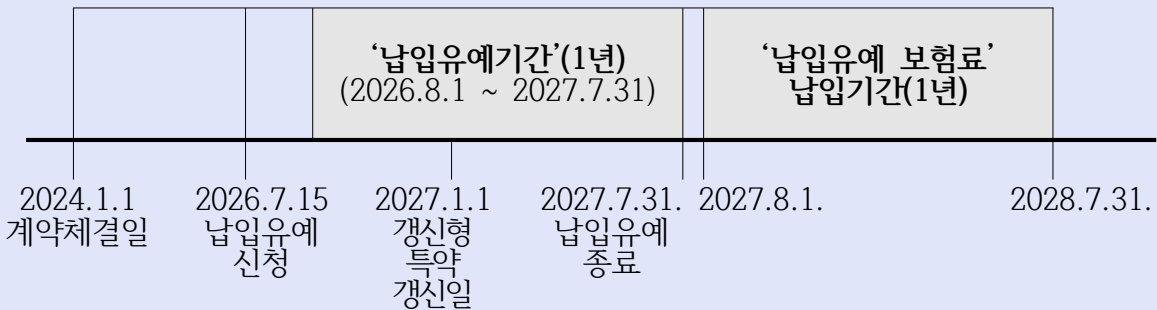
② ‘납입유예기간’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납입유예기간’과 동일 기간(이하 ‘납

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한다)동안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란 '납입유예' 신청 전의 해당 기간 납입기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이하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라 한다)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납입유예기간' 중 해당계약 갱신형보험의 갱신일 도래시, 갱신형보험의 '납입유예 보험료'는 갱신일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전 보험료, 갱신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후 보험료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예시]

<기준> 주계약 (비갱신형, 월납, 20년납), 갱신형특약 갱신주기 3년, 납입기일 매월 1일, '납입유예기간' : 1년 가정시



구분	납입보험료	'납입유예기간' (1년)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1년)	'납입유예 보험료'
주계약	20만원	2026.8.1 ~ 2027.7.31 ('26.8.1부터 12회)	2027.8.1 ~ 2028.7.31 (매월 납입기일에 12회 납입)	20만원 × 12회
갱신형 특약	최초계약: 3만원 1회차 갱신계약: 4만원			최초계약: 3만원 × 5회 1회차 갱신계약: 4만원 × 7회

※ 다만,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와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계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서의 보험료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납입유예 보험료' 전액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주계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계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서의 보험료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납입면제 사유 발생으로 보험료가 납입면제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납입면제 되기 전까지의 해당계약의 '납입유예 보험료' 전체를 일시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⑦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해당계약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입유예' 취소 신청시 '납입유예' 취소 신청 전까지의 '납입유예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납입유예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선납 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납입유예 보험료'는 선납 할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⑩ 제8항 및 제9항의 경우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⑪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및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감액, 계약자, 납입기간 및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⑫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및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⑬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및 '납입유예' 신청 및 처리로 인해 계약에 적용되는 주요사항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⑭ 회사는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각 지급금에 해당하는 해당계약의 '납입유예 보험료'를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일시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